

#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찬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3. 26.

발의자 : 이찬열 · 전혜숙 · 황주홍  
김동철 · 김철민 · 윤후덕  
유승희 · 박찬대 · 윤관석  
박주민 · 김종희 · 김현아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부담금관리 기본법」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부담금의 운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,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해당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그러나 부담금운용 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부담금의 정비를 권고한 경우에도 부처의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 부담금이 존치되는 등 평가결과가 부담금 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개정안은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및 이행 실적을 각각 “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”와 “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”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운용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7조제1항).

##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사용 계획 등”을 “사용 계획, 제8조에 따른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사용명세 등”을 “사용명세,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